

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813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일자 : 2023년 6월 20일

제안자 : 도시안전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보도상영업시설물은 정식 점용허가 시설물에 해당하고, 이전조치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존의 상권 포기과 일부 영업상 손실 발생 및 새로운 이전 위치의 주변 건물주 반발 등을 감안해야 함.
- 따라서, 공사 준공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안전 또는 원활한 통행에 대한 저해 요인이 해소된 경우 원위치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공사 준공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안전 또는 원활한 통행에 대한 저해 요인이 해소된 경우, 이전한 보도상영업시설물을 원위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제2항제2호마목 단서신설).

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제2항제2호마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공사 준공 등으로 안전 또는 원활한 통행 저해 요인이 해소
된 경우에는 원위치 할 수 있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8조(시설물 이전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과밀시설물 또는 위치부적정 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으며, 해당 시설물의 이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위치부적정 시설물 가. ~라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설>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마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8조(시설물 이전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 가. ~라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마. 인접 건물 공사 등 주변 환경의 변화로 안전 또는 원활한 통행을 저해하는 시설물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바. (현행 마목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8조(시설물 이전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 가. ~라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마. 인접 건물 공사 등 주변 환경의 변화로 안전 또는 원활한 통행을 저해하는 시설물. 다만, 공사 준공 등으로 안전 또는 원활한 통행 저해 요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원위치 할 수 있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바. (현행 마목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제2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마. 인접 건물 공사 등 주변 환경의 변화로 안전 또는 원활한 통행을 저해하는 시설물. 다만, 공사 준공 등으로 안전 또는 원활한 통행 저해 요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원위치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수 정 안
<p>제8조(시설물 이전) ① (생 략)</p> <p>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과밀시설물 또는 위치부적정 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으며, 해당 시설물의 이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위치부적정 시설물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라. (생 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padding-right: 20px;"><u><신 설></u></p> <p>마. (생 략)</p> <p>③ (생 략)</p>	<p>제8조(시설물 이전) ① (현행과 같 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마. 인접 건물 공사 등 주변 환경의 변화로 안전 또는 원활한 통행을 저해하는 시설물. 다만, 공사 준공 등으로 안전 또는 원활한 통행 저해 요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원 위치 할 수 있다.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바. (현행 마목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